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창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998호)

2025.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에 대한 특례	3
2.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 신설	11

I. 개요

1. 한창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99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창민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8. 5.

(3) 회 부 일 : 2025. 8. 6.

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적인 고용계약관계로 포괄할 수 없는 노무제공자 등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이에 따라 이들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고용보험법」에서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참조하여 현행법에서도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공단이 업무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받은 기관이 업무를 위임한 사업장의 보험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보험사무의 대행은 보험사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격, 건강보험료 납부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된 사항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의 범위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건강보험 관련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은 직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안 제3조의2 신설).
- (2) 적용대상사업장에 포함되거나 제외된 사실의 신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등 건강보험 관련 각종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정 근거를 명시하고, 그 업무범위를 규정함[안 제3장의2(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신설].
- (3) 노무제공계약 또는 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계약해지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93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에 대한 특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법 제3조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1)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을 받는 예술인,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2)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해당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 2 신설 및 제93조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조의2(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

- 1)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생략)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심의에 한정한다)

2. ~ 6. (생략)

② ~ ⑦ (생략)

제93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가 이 법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증가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정

자 적용을 받는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 및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근로자 및 사용자로 본다.

제3조의3(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현행 제3조의2와 같음)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

-----.

1. 제3조의3제1항-----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93조(근로자 등의 권익 보호) --

-----사용자(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

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u>해고나</u>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 ----- -----<u>해고나 계약해지, 계약연장</u> <u>거절 또는</u>-----.
--	--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며,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됨. 이 중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며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됨³⁾.

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 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현행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건강보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월액의 3.545%씩을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7.09%)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 이와 같이 현행법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요건으로 "근로자"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장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노무제공계약이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나 예술인은 직장가입자에 포함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 플랫폼 산업의 활성화 등으로 고용형태가 다변화되면서 노동관계법령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등)와 예술인 등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2020~2022년에 걸쳐 「고용보험법」⁵⁾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⁶⁾이 각각 개정되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4)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1만분의 709로 한다.

5)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대상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편입되었음.

< 고용보험 가입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

시행일	노무제공자 범위
2021년 7월 1일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육교구 방문강사, 집화·배송 업무 담당 택배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원,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운전원,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
2022년 1월 1일	○ 퀵서비스업자 및 대리운전업자 추가
2022년 7월 1일	○ 물류센터·소비자 화물 운송 및 자동차·곡물(사료) 운송 화물차주, 소프트웨어사업 노무제공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원 및 골프장 캐디 추가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

시행일	산업재해보상보험 피보험자의 범위	비고
2008년 7월 1일	○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및 골프장캐디	전속성 요건 충족 필요
2012년 5월 1일	○ (기존 가입 대상) + 택배기사 및 퀵서비스기사	
2016년 7월 1일	○ (기존 가입 대상) +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및 대리운전기사	
2020년 7월 1일	○ (기존 가입 대상) +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및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원)	
2021년 7월 1일	○ (기존 가입 대상) + 소프트웨어 기술자	
2022년 7월 1일	○ (기존 가입 대상) +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화물차주(자동차, 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원)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①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시행일	산업재해보상보험 피보험자의 범위	비고
2023년 7월 1일	○ (기존 가입 대상) + 탁송기사, 대리주차원, 일반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및 건설현장 화물차주	전속성 요건 폐지
2024년 1월 1일	○ (기존 가입 대상) + 새마을금고·신협 공제모집인 및 방과후학교강사(유치원 방과후강사 및 어린이집 특별활동프로그램강사 포함)	

□ 개정안은 현행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의 정의⁷⁾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보아 직장가입자에 포함시키고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 보험료의 반액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다만,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의 직장가입자 전환 시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집단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점, 현재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해당하나⁸⁾ 개정안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편입될 경우 추가적인 보험료

7)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나.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다.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운영하는 자

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에는 법률 개정 이전까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이 가입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도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제도에 이미 편입되어 있는 점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려는 취지에서 전종덕의원(제1429호)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어 이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의 자격 기준은 전체 가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바, 특정 직역을 위한 특례 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노무제공자·예술인의 직장가입자 전환으로 발생하는 사용자 부담('25년 기준 3.545%) 증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피부양자인 일부 노무제공자는 직장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은 고용·산재보험과 달리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하여 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고, 노무제공자의 직장가입자 전환으로 인해 오히려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저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노무제공자 등을 고용하는 영세·소규모 사용자 역시 신규로 사용자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개정에 신중한 필요가 있음.

□ 대한의사협회

- 현재 노무제공자와 예술인도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노무제공자 등의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 유형이 다양한 상황에서 소득 파악은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과소신고 또는 미신고 시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소득과액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가입자로 적용할 경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바 특정 직역을 위한 특례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지정을 받은 이후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사업주가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보험료의 납입의 고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고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공단이 가산금 또는 연체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이를 납부하도록 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도록 하는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공단으로 하여금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신설 및 제97조제1항, 제119조제5항·제6항)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제3장의2 보험사무대행기관 제40조의2(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사실, 제7조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이 변경된 사실,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및 가입자의 보수월액 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사업주가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인등이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법인등(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공단에 신고하여야

<신 설>

한다.

⑤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업무가 전부 폐지되거나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폐지신고일 또는 지정취소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⑦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3(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공단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보험료의 납입의 고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고지를 갈음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97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보수·소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제119조(과태료) ③·④ (생략)

제40조의4(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공단이 제78조의2에 따른 가산금, 제80조에 따른 연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0조의5(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0조의6(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7조(보고와 검사) ① -----
-----사용자, 보험사무대행기관-----

-----.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19조(과태료)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40조의5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 ----- ----- -----.
---	---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업무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봄.

나. 검토의견

- 「국민건강보험법」은 이 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위해 사용자에게 대해서 사업장 현황⁹⁾,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속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변동, 상실 명세에 관한 사항¹⁰⁾ 등을 공단에

9)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경우
2. 휴업·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4.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제7조), 그 밖에 사업주는 공단에 대하여 보수총액 신고, 보수월액 변경 신고 등을 함.

<사업주가 공단에 하여야 하는 사무>

보험사무	법령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상실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제10조(자격의 상실시기 등), 시행규칙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상실의 신고)
외국인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상실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시행규칙 제61조(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외국인 가입자 자격제외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시행령 제76조의2(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시행규칙 제61조의4(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사업장 적용·내용변경·탈퇴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 시행규칙 제3조(사업장의 적용·변경·탈퇴신고)
보험료 정산을 위한 보수총액 신고 등(연말정산, 퇴직정산)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시행령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등의 통보),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시행규칙 제40조(보수총액 등의 통보)
보수월액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연말정산)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시행령 제39조(보수월액 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보수월액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시행령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시행규칙 제41조(보수월액의 변경신청)

4. 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험사무	법령
보험료 경감 신청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보험료 경감고시
납입 고지 유예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와 그 해지신청 등)
보험료 납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현재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상실 신고업무, 보수월액 변경 신고업무 등은 건강보험분야 전자민원서비스(이하 “웹EDI”)를 통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한데, 공단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인 「웹EDI 업무대행 위임 처리기준」을 두고 운영 중에 있으며, 동 지침에서 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해당 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웹EDI를 통한 신고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대행기관을 통해서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제3조),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회계·세무·노무법인(개인사업자로 회계사·세무사·노무사를 포함한다), 행정사, 한국경영원 등이 공단에 지정을 신청한 후 대행기관 지정을 받아야 하고(제5조), 대행기관은 사용자로부터 위임장을 제출받아 공단에 이를 첨부하여 신고한 후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음(제6조).

「웹EDI 업무대행 위임 처리기준」 주요내용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웹EDI”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계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자격, 보수 등에 관한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업무대행기관 및 위임사업장 범위 등) ①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하여야 하는 신고(웹EDI를 통한 신고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이 된 사업장으로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업무대행기관에 대해서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업무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공단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아 제3조제1항에 따라 웹EDI를 통하여 대행 신고할 수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이 된 사업장으로 회계·세무·노무법인(개인사업자로 회계사·세무사·노무사를 포함한다), 행정사, 한국경영원 등으로서 공단에 신청하여 신고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하 “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자에 한정한다.

제6조(업무위임 절차)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사용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 승인을 받은 업무대행기관에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위임장(별지 제6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임 사용자로부터 웹EDI 신고대행 업무를 수임한 업무대행기관이 웹EDI를 통하여 대행 신고를 하려면 해당 업무 수임 시 지체 없이 그 관할 공단 지사에 웹EDI를 통하여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위임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위임장(별지 제6호 서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수임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업무대행기관 및 위임한 사용자에게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웹EDI를 통한 대행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통지를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승인·불승인) 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대행기관: 웹EDI를 통하여 통지
2. 위임 사용자: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통지

- 이에 2025년 7월말 기준으로 11,512개소의 웹EDI 업무대행기관이 644,660개소 사업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웹 EDI 업무대행 현황('25.7.31.기준) >

(단위: 개소)

전체 사업장 수	웹EDI 이용 사업장 수	업무대행기관 수	위임사업장 수
2,037,210	1,361,897	11,512	644,660

주1) 웹EDI 이용 사업장 수: 웹EDI 가입사업장과 웹EDI 업무대행위임만 맡긴 사업장 수 합계

주2) 업무대행기관 수: 웹EDI를 가입한 업무대행기관 수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정안은 사업장이나 가입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공단에 하여야 할 국민건강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정 근거와 그 업무범위 등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보험사무의 대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현장을 반영하여 법률에 직접 그 근거를 마련하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려면 공단의 지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무자격자 또는 전문성이 부족한 수탁자의 연금사무 대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등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1)은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② 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등(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는 행정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촉진 및 보험료의 적정한 징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71년부터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각종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소규모 사업장 사무처리 부담 경감과 보험업무처리 간소화·효율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¹²⁾).

- 1983년 12월 법률 제3713호로 개정·공포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에 관한 사무를 수탁하여 행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의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고,¹³⁾

-
-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 3.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⑥ 제4항에 따라 업무가 전부 폐지되거나 제5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폐지신고일 또는 인가취소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다.
 - ⑦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공단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공단이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제25조에 따른 연체금 및 제26조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12) 2015 보험사무대행기관 실무편람(근로복지공단) p. 3

- 13) **법률 제371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1983. 12. 31. 공포 1984. 4. 1. 시행>
제19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 ①보험가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하 “事業主團體”라 한다)는 보험가입자의 위탁을 받아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保險事務”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사업주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인가를 받은 사업주단체(이하 “保險事務組合”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폐지하거나 인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거나 그 처리가 부당하거나 사무처리를 해태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인가를 취소 할 수 있다.
 ⑤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을 교부할 수 있다.

1993년 12월 법률 제4644호로 제정·공포된 「고용보험법」에서도 이 법에 따른 보험에 관한 사무를 수탁하여 행할 수 있는 ‘고용보험사무조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¹⁴⁾

2003년 12월 법률 제7047호로 제정·공포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게 되면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법적 근거가 정비되었음.¹⁵⁾

14) 법률 제4644호 「고용보험법」

제64조(고용보험사무조합) ①사업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하 “事業主團體”라 한다)는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保險事務”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사업주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주단체(이하 “雇傭保險事務組合”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폐지하거나 인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의2제4항 및 제5항, 동법 제19조의3 내지 제19조의5의 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 및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등(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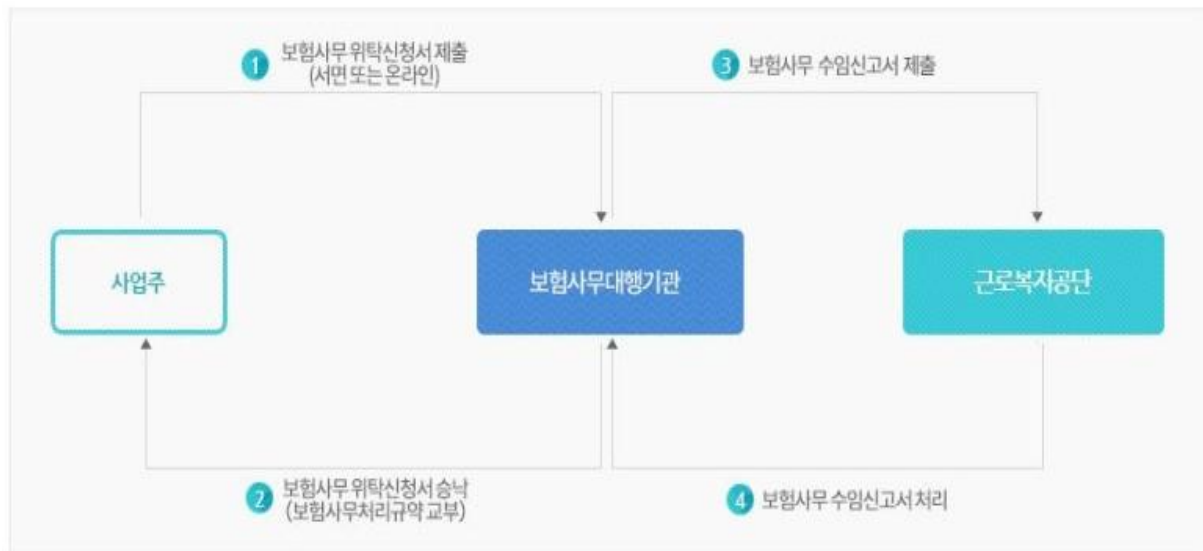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제4항에 따라 업무가 전부 폐지되거나 제5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폐지신고일 또는 인가취소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다.

⑦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험사무대행 절차를 살펴보면, ① 보험사무 대행을 원하는 사업주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선택하여 “보험사무 위탁신청서”를 제출하면, ②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승낙(불승낙)을 통보하고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을 교부한 이후, ③ 사업주와 보험사무 위탁계약 체결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면, ④ 공단의 “보험사무 수임신고서” 처리와 함께 보험사무 대행이 개시됨.¹⁶⁾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 절차 >



자료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제3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공단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공단이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제25조에 따른 연체금 및 제26조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0조(과태료) ② 제36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comwel.or.kr/comwel/paym/offi/prxy_syst.jsp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먼저, 개정안은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공단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 이를 제재할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정 근거와 그 업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 확보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 다음, 안 제40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주체(공인노무사·세무사 등)를 현행 웹EDI 업무대행 위임 처리기준 대비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웹EDI 업무대행 위임 처리기준에 따른 업무대행기관으로서 보험사무를 수탁·대행 중인 공인회계사·행정사 등의 업역이 축소되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업무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현재 공단으로부터 지정을 받았으나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없는 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현행법령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각종 신고 의무 이행에 따른 행정비용을 국가나 공단 등이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안 제40조의6에 따라 공단이 직장가입자 사업주의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지원금을 교부하게 될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민연금의 연금사무대행기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 등으로 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97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직장가입자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업장은 이미 보험사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연 1회 자동화된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보험료를 부과·정산하므로 수시 신고의 필요성이 낮고 행정 절차도 단순함.
- 또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세대별로 부과·징수되므로 보험사무대행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지역 간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금 지급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건강보험 재정이나 가입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의 자격관리, 보험료 납부 등은 고용·산재보험과 달리 직종별 요율이 복잡하지 않고, 현재 공단 신고채널(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음.

- 또한, 보험사무대행기관 도입이 직장가입자 신고에 편중된 만큼 대행기관 이용 유무에 따라 형평성 논란 및 미이용자(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면 요구 등 사회적 혼란의 소지가 있음.
- 아울러 고용·산재보험의 납부제도 또한 기존 자진신고납부제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산정의 주체가 되는 부과·고지납부제도로 변경되었으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의 실효성 및 존치에 대해 재검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 한편, 일부 지역의 편익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금 지원시 지속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전 국민이 대상인 건강보험 특성상 사회적 비용은 가입자 모두에게 전가되어 보험료 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대한의사회

- 보험사무 대행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현재도 사용자가 세무사 또는 노무사 등에게 위탁하여 건강보험 웹EDI를 통해 가입자 자격 취득·상실·변경 신고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무 대행기관 지정 절차 등을 신설하는 것은 행정비용 증가 및 중소 및 영세사업장에 대한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 또한, 공단의 보험사무 대행기관 지원금 교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요인이 되어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보험사무 대행 비용이 사용자에게 전가되어 중소 및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바 사용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와 함께 대행기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고 종합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03